

주거공간 디자인

가정교육과 김도연

청년주거지원

학습목표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을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주거복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담없는 집을 찾아보자.

청년주거지원

학습내용

1. 청년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
2. 청년 금융지원제도
3. 주거 정보제공 및 교육

청년주거지원정책

주거복지로드맵

청년	
01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소형, 일자리 연계형 임대 25만실, 기숙사 5만 명
02	맞춤형 전월세 대출 25세 미만도 전세대를 지원, 월세 대출 한도 확대
0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최고 연 3.3% + 청약 기능, 비과세
04	정보 교육 강화 마이홈포털 기능 강화



- 행복주택
- 매입·전세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대학생기숙사(공공기숙사)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원)
- 공공분양주택 34만호 공급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 주거안정 월세대출
-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 마이홈 포털 정보제공확대
- 청년대상 찾아가는 주거상담 및 교육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01.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

일반

만 19~39세 청년이라면!



- 1 행복주택
- 3 공공지원주택

특정

대학생이라면!



- 1 행복주택
- 2 매입·전세임대
- 3 대학생 기숙사

취업준비생(졸업 2년 내)이라면!



- 1 행복주택
- 2 매입·전세임대

사회초년생(소득업무 종사 5년 이내)이라면!



- 1 행복주택

만 19-39세 이하 청년을 주
대상으로 도심내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

다양한 맞춤형 주택 공급



❖ 행복주택

1 행복주택



입주대상

만 19~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연령제한 없음)



① 본인소득 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 이하



② 본인소득 無

부모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소득있는 대학생 포함)

※소득활동이 없는 청년도 입주 가능(기존에는 청년 중 대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만 가능)

임대료

시세의 70%내외

맞춤형 주택

세어하우스, 소호형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여성안심주택 등의 형태로도 공급

❖ 행복주택



임대기간: 최대 6년까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 and 학교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6㎡



29㎡



❖ 행복주택

구분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다음학기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태)한 자 2년 이내의 무주택자	



계층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기준
청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본인은 80%이하) - 자산기준: 총 자산이 2.8억원 이하 (자동차는 2,499만원이하)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이내인 자(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의 합이 5년 이내) -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행복주택 - 창원가포(행복주택)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184(가포동)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대학생은 ①-㉠과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과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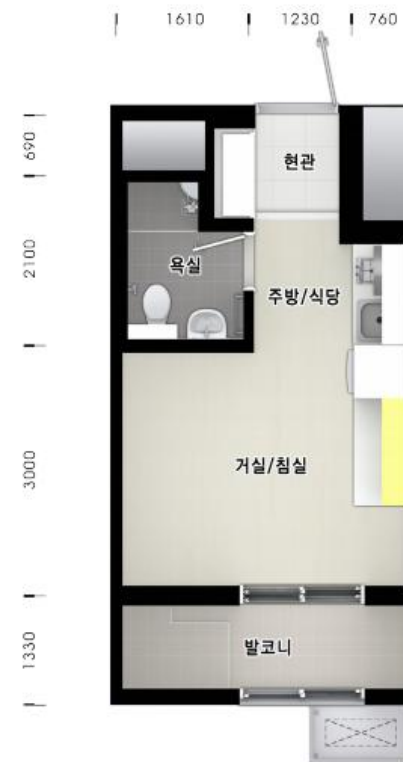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16형 대학생 청년



대학생 계층 조건, 보증금 최대전환

보증금: 1,880만원

월임대료: 77,930원

26A형 대학생 청년



보증금: 1,966만원

월임대료: 61,63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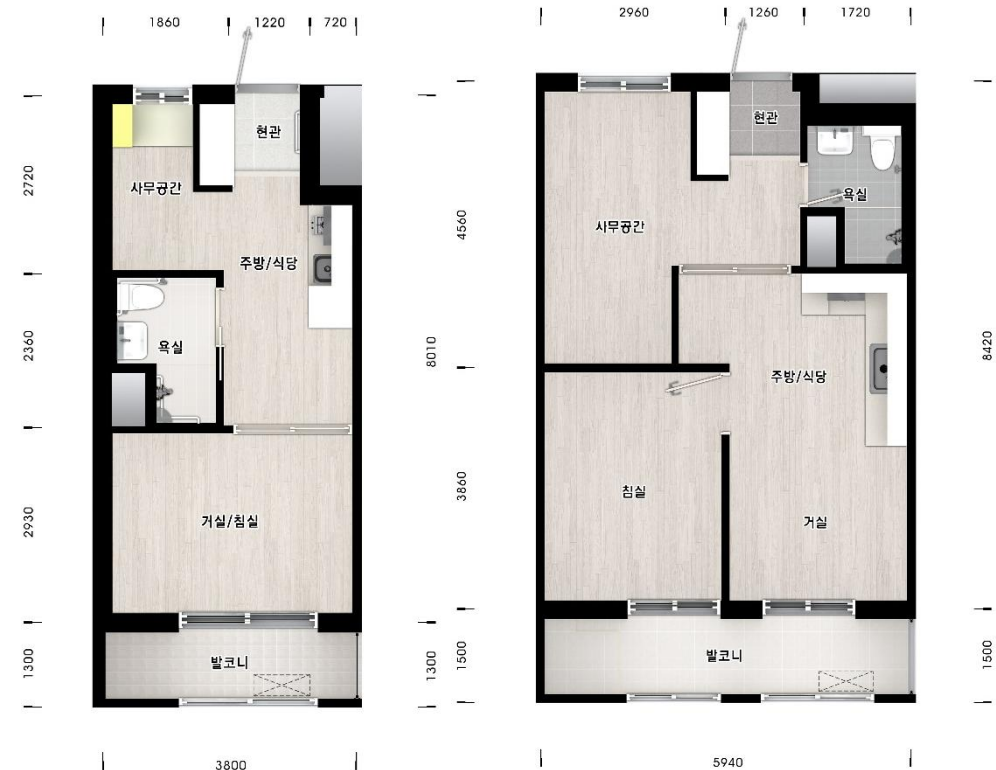
❖ 행복주택 - 창원반계 창업지원주택(행복주택)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자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이 결합된 주거용 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으로 (예비)창업자 및 근로자이거나 창원시장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는 자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일 것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건설 호수	예비자 모집 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최대거주 기간(년)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월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합계		
25AB	창업자	192	80	25.76	13.5918	4.8996	15.3116	59.5630	6~10	'21.2
	대학생			25.70	13.5972	4.8882	15.2759	59.4613	6	
	청년									
25C (주거약자용)	창업자 (주거약자)	16	50	25.70	13.5972	4.8882	15.2759	59.4613	6~10	
44	창업자	108	20	44.69	22.3632	8.5003	26.5635	102.1170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25AB	창업자	43,980,000	66,270
	대학생	41,370,000	63,420
	청년	43,980,000	66,270
25C	창업자(약자)	43,980,000	66,270
44	창업자	72,044,000	94,460

❖ 청년전세임대주택

2 매입·전세임대



입주대상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입주순위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

2순위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3순위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청년

임대료

1 2 순위 시세의 30%

3 순위 시세의 50%

임대기간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맞춤형 주택

세어하우스 형태로도 공급

1순위 최장 10년

❖ 청년전세임대주택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언제·어디서나·누구나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포털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



2년 단위 3회까지
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공급면적
60m² 이하
주택 지원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그 외 8,500만원
지원

❖ 청년전세임대주택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34&mPid=231>

- 청년층(대학생 ·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주택
- 입주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 39세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청년, 아동복지시설 퇴소한지 6년 이내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2023년 3월 기준
 -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대상주택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가입 가능

❖ 청년전세임대주택

➤ 전세금 지원 한도액

		면적(전용)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단독거주	1인 거주	60㎡이하	1.2 억원/호	9천5백 만원/호	8천5백 만원/호
공동거주(세어형)	2인 거주	70㎡이하	1.5 억원/호	1.2 억원/호	1.0 억원/호
	3인 거주	85㎡이하	2.0 억원/호	1.5 억원/호	1.2 억원/호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 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1-2순위:1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3-4순위 200만원	연 2.0%	연 2.5%	연 3.0%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12,000만원 - 100만원) × 1.5% ÷ 12] = **148,750원**

청년 1순위 : 0.5%p 우대금리 적용하여 1.5%가 됨

3-4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6천만원 주택을 마산에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6000만원-200만원) × 2.5% ÷ 12] = **120,834원**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6천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로 임차

※ 임차료지급보증 선택
 (임대보증금) 175만원(기본 100만원+ 3개월 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0%(연) ÷ 12개월]
 = [(6,000만원 - 175만원) × 1.0% ÷ 12] = **48,541원**

※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음
 (임대보증금) 400만원(기본 10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0%(연) ÷ 12개월]
 = [(6,000만원 - 400만원) × 1.0% ÷ 12] = **46,666원**

❖ 청년전세임대주택

➤ 임대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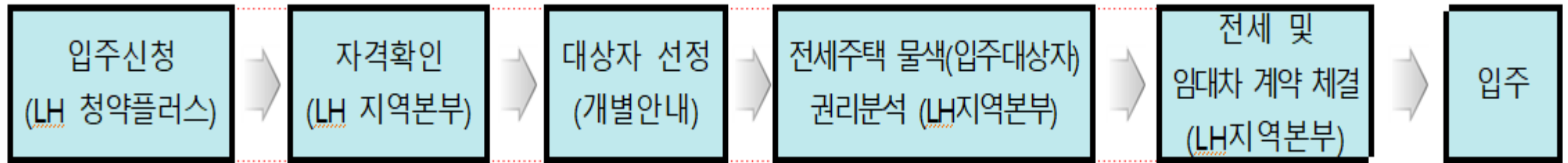
- 청년 1순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
- (입주 후 결혼한 경우)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 주택물색 관련 주의사항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 물색
- 입주대상자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

❖ 청년전세임대주택

-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임대주택(청약신청)
- 문의 : 경남지역본부(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1670-0002)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 청년전세임대주택

➤ 전세지원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1순위, 2순위(저소득가구 청년)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000\text{만원} - 100\text{만원}) \times 2\% \div 12] = 131,660\text{원}$$

보증금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1-2순위:1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3-4순위 200만원	연 2.0%	연 2.5%	연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13,1660원

※ 3순위(일반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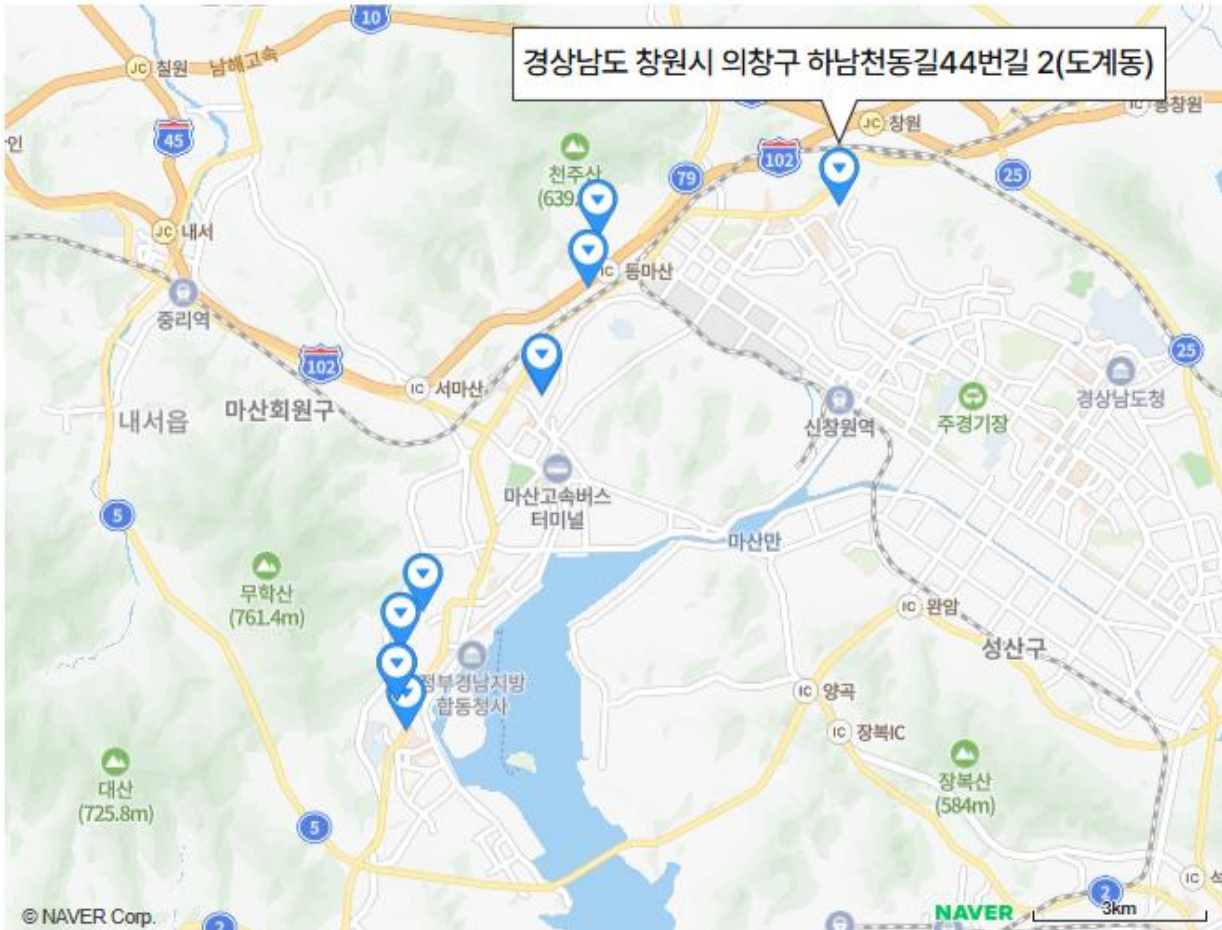
$$= [(8,000\text{만원} - 200\text{만원}) \times 3\% \div 12] = 195,000\text{원}$$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195,000원

❖ 청년임대주택 - 청년매입임대

➤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③ 취업준비생(졸업·종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자체명	주택정보			전용여부	공급호수	모집인원	신청건수
합계					50	100	301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진해)	지도 Q	홍보물 Q	해당없음	3	6	26
	경남 창원시(창원)	지도 Q	홍보물 Q	해당없음	4	8	92
	경남 창원시(마산)	지도 Q	홍보물 Q	해당없음	7	14	96
	경남 창원시(공동거주형)	지도 Q	홍보물 Q	해당없음	11	22	8
	경남 김해시	지도 Q	홍보물 Q	해당없음	10	20	46
	경남 양산시	지도 Q	홍보물 Q	해당없음	15	30	33

❖ 청년임대주택 - 청년매입임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2가

월세 500/40

관리비 3만원

BEST 연세병원 롯데마트 인근 베란다있는 풀옵션 원룸

전용 26.44m²

전경(외관)



내부 1



- 주소 : 마산합포구 문화동 00(월남동 4가)
- 전용면적 : 29.91 m² / 공용면적 14.77 m²
- 임대료
 - 1순위 청년: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145,920원
 - 2순위 청년: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174,040원
- 옵션 :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가스쿡탑, 세탁기
책상, 의자, 옷장

내부 2



주방 겸 거실



다용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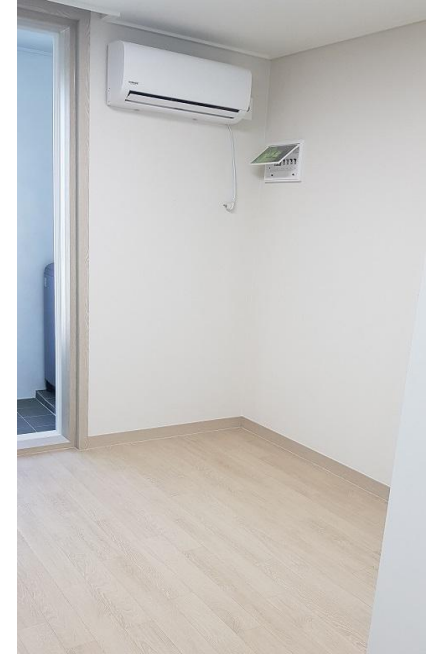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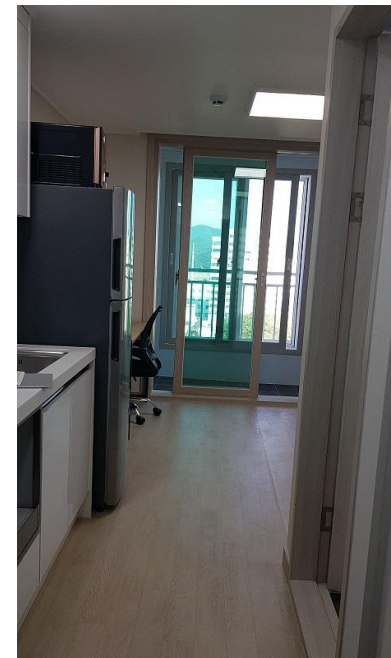


화장실



❖ 청년임대주택 - 청년매입임대

- 주소 : 마산합포구 문화동 00(평화동)
- 전용면적 : 16.98㎡ / 공용면적 6.83㎡
- 임대료
 - 1순위 청년: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126,270원
 - 2순위 청년: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148,720원
- 옵션 :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가스쿡탑, 세탁기
책상, 의자, 옷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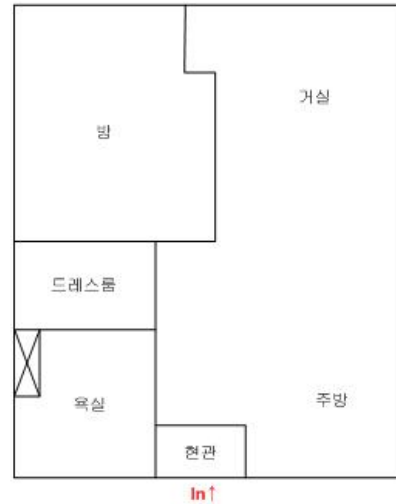




청년매입임대

74.4766㎡(구. 22평형) - 126실

구분	㎡	평
전용면적	41.2702	12.48
공유면적	21.7993	6.59
공급면적	63.0695	19.08
분양면적	74.4766	22.53



- 주소 : 마산합포구 오동동(고려타워)
- 전용면적 : 41.27㎡ / 공용면적 33.13㎡
- 임대료
 - 1순위 청년: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103,180원
 - 2순위 청년: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122,160원
- 옵션 : ?

<https://youtu.be/VeCi6Zk05kE?si=l4m7lxKf37D9hvYB>

❖ 공공지원주택 (사회적 주택 or 사회주택)

3 공공지원주택



입주대상

만 19~39세 이하 청년



① 본인소득 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② 본인소득 無

부모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임대료

시세의 70~85%

※ 기존에는 입주자격 및 초기임대료 제한 없음

맞춤형 주택

세어하우스 형태로도 공급

입주기간

최초 2년 계약(입주자격 충족시 최대 8년 거주 가능)

❖ 공공지원주택 -사회적 주택

사회적 주택

SH와 LH 등의 공공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을 운영기관(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대학생(취업준비생)과 청년(사회초년생, 예술인)에게 **주변 시세 50% 수준**으로 커뮤니티 및 취업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사업

공급주체	국토교통부	
공급대상	① 대학생계층 :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② 청년계층: 청년(만 19-39세 이하) 또는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내)	
입주자격	-대학생: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사회초년생: 본인의 월평균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임대료	시중 전세가격의 50% 수준(감정평가)	
거주기간	2년 단위 계약(최대 거주기간 6년)	

❖ 공공지원주택 -사회적 주택

디딤하우스 성내



위치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9길 18-8

층수

지상 2층 ~ 5층

세대내 기본시설

책상, 옷장,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전자레인지, 신발장

공용시설

엘리베이터, 무인택배함, CCTV, 분리수거함, 주차장 13대(주차비 별도)

관리비 부과방법

세대별 사용한 만큼 부과(50,000원 내외 / 개별 수도, 전기, 난방 공과금 별도)

[더 알아보기](#)

기 준(2021)		1인	2인	3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2,991,631	4,562,535	6,240,520
	110%이하	3,290,794	5,018,789	6,864,572
	120%이하	3,589,957	5,475,042	7,488,624

※ 청년①의 본인 및 부모 : 3인 100% 이하 소득 확인

※ 청년①의 본인 및 부모는 모 : 2인 110% 이하 소득 확인

※ 청년②의 본인 : 1인 120% 이하 소득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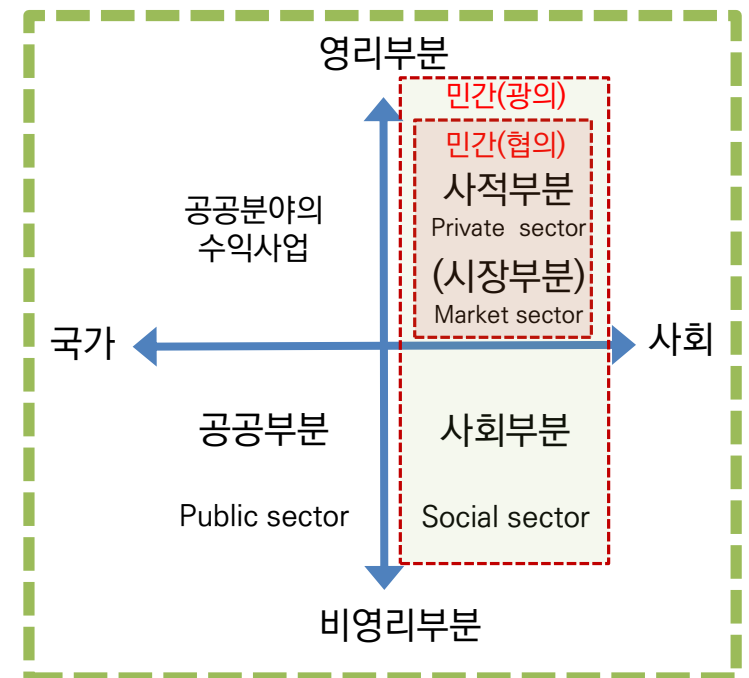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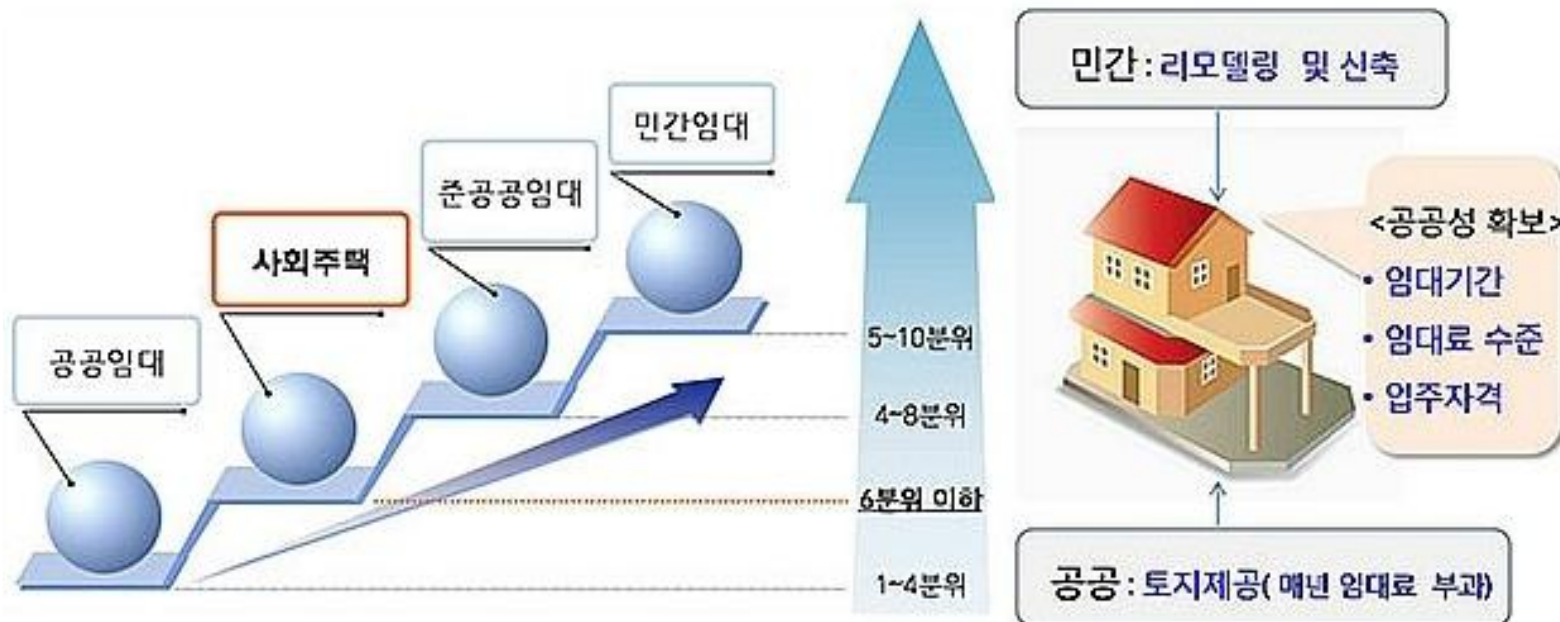
전용면적: 41.92㎡
보증금: 38,143,000원
월 임대료: 494,000원

구 분		내 용
정량적 평가 기준	소득 수준	입주신청자와 부모의 소득 수준
	사회적주택에 대한 이해도	사회적주택에 대한 인식 자치규약 준수
정성적 평가 기준	공동체 지향성	소통 역량 공동의 문제해결 역량 커뮤니티 활동 계획 공동체, 마을활동 경험 등
	콘텐츠, 재능	컨텐츠, 경력, 자격증
	주거안정도	장기거주 계획
	보증금 조달 능력	임대보증금 조달 방안
	주거 독립 필요성	취학, 취업 등 독립생활 필요성 기존 주거지 열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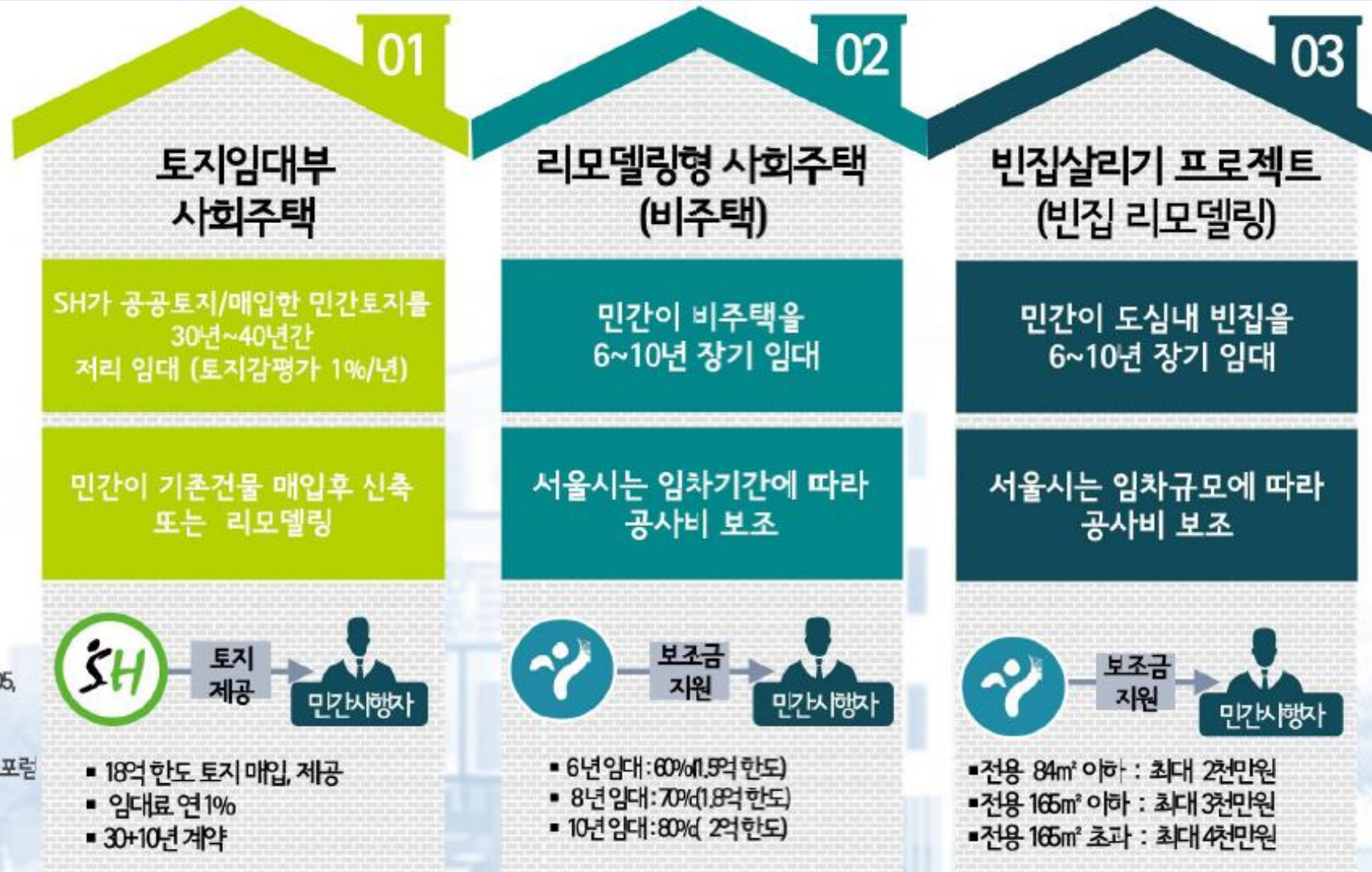
❖ 공공지원주택 -사회주택

사회주택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민간임대주택의 하나로서,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고 저렴한 임대료 및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갖는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주택.



❖ 공공지원주택 - 사회주택



▶ 자료 :

최경호(2018.05,

참여연대

주거도시정책포럼

10차 포럼

발표자료

❖ 공공지원주택 -사회주택

구분	토지임대부	준주택 리모델링형	빈집살리기
지원방식	토지임대 (민간토지 매입 후 저리임대)	보조금 (리모델링비 70~80% 지원)	보조금 (리모델링비 최대 50% 지원)
지원자격	조례에 따른 사회적 경제 주체(사회적 기업/협동조합/비영리기관…)		
입주자 자격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100%이하 (1인 가구 70%, 2인 이상 100% 이하)	무주택 1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대학생, 부모의 주택 소유와 무관하며 가구소득 100%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임대료	시세 80%이하 , 임대료인상률 연간 5% 이내		
임대 의무기간	30년 이상 40년 이내	최소 8년 이상 (지원금액에 따라 최대 10년)	최소 6년 이상 (지원금액 3천만원 초과시 8년)
방식	공공-민간협력형/신축	준주택 활용하여 전대 등으로 재임대	가옥주로부터 전대하여 세어하우스 등으로 재임대
입주민	상대적으로 형편 양호 가구 규모 다양	세어하우스, 1인 가구, 청년	세어하우스, 1인 가구, 청년
기타	민간토지 매입 시 감정가 기준으로 매입	서울시 세어하우스 건축가이드라인 의 무 적용	협약기간 동안 입주민에 대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필수

❖ 공공지원주택 -사회주택



주소 :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159 (연남동)

5.1. 주택 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1) 전용 주거 공간

주거형태	개인 제공 품목
원룸형	가구류 : 주방가구, 신발장, 욕실하부장 가전류 : 에어컨, 냉장고(206L), 드럼세탁기(9Kg), 디지털 도어락, 인덕션, 주방후드, 세대열교환기

세대 안내							
201 호	면적(㎡)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공급 면적	발코니			
				확장	비확장		
	22.57	6.83	29.40	2.22		111,040,000	560,000

2) 공용 공간

구분	공용 공간	공유 가전	생활 편의
공용 공간	주방가구, 냉장고, 인덕션, 테이블 및 의자	청소기	24 시간 CCTV, 출입문, 현관 도어락, 공구류, 야외용 소파, 테이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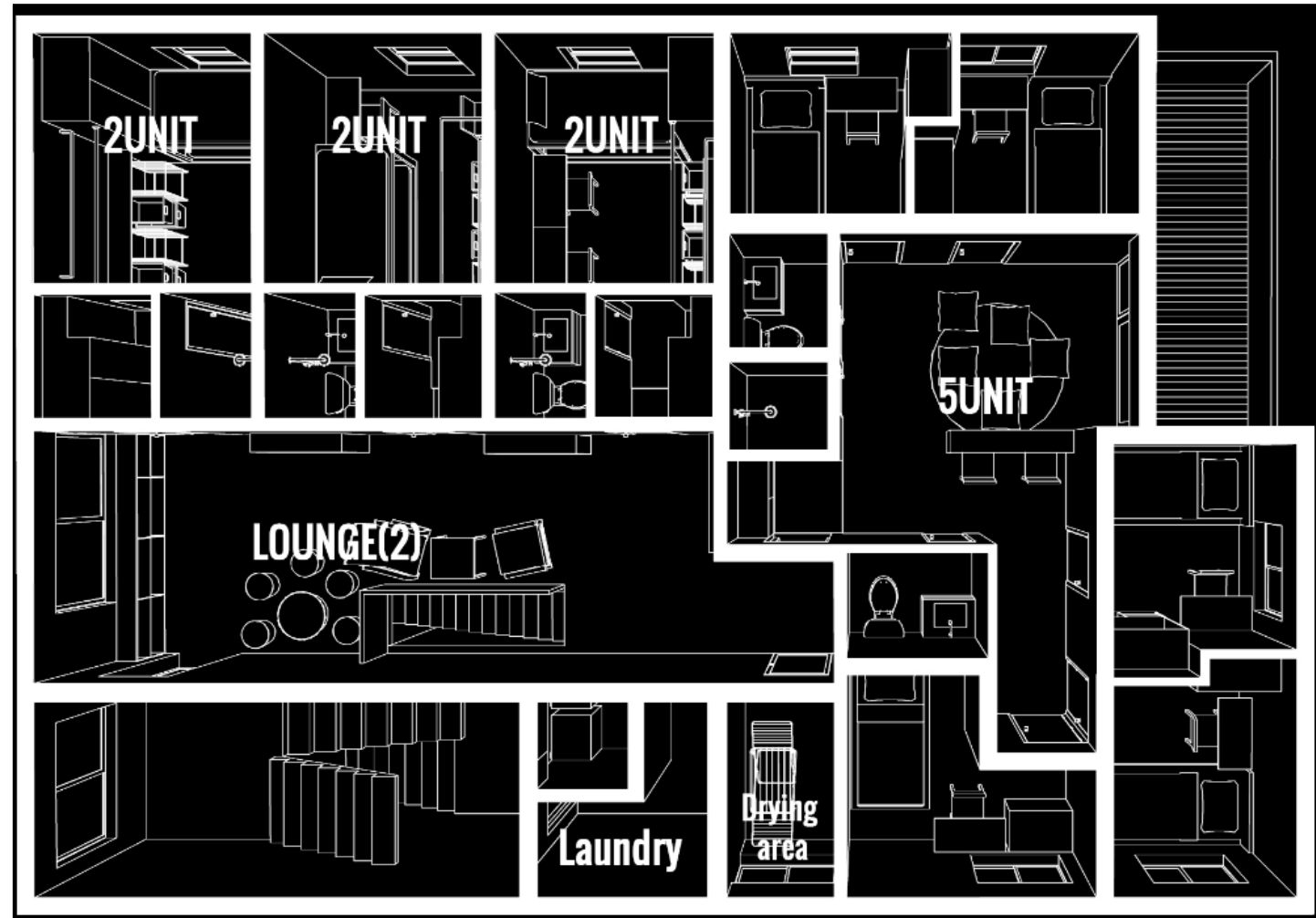


월세 : 560,000원 ~ 770,000원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uhjjuhdah/>

❖ 공공지원주택 -사회주택

<https://share-us.kr/index#COMMUNITY>



1인 1실 보증금 300만원 월 39만원, 관리비 4만원/ 5unit 1인실 보증금 200만원 월 34만원, 관리비 4만원

❖ 기숙사형 청년주택

24만원 이하의 저렴한 기숙사비로 운영되는 행복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12년부터
월 24만원 이하의 기숙사비가 저렴한
행복기숙사 건립을 통해 23,336명의
안전한 주거시설을 확보
하였습니다.

(공공기금 지원 : 6,249억원)



행복(공공) 기숙사

사립대학 부지 내 건립하는 기숙사로
해당 대학 학생들의 거주여건 개선

(기숙사비 : 월 24만원 이하, 2인실 기준)



행복(연합) 기숙사

유휴 국·공유지에 건립하는 기숙사로
인근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대학생의 거주여건 개선

(기숙사비 : 월 19만원 이하, 2인실 기준)



사립대학 내 부지를 활용한 **행복(공공) 기숙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행복(연합)기숙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대학생들의 안전한 주거여건을 조기에 확충하고, 저렴한 기숙사비로 학생들의 거주비 부담을 낮춰 대학생들이 거주비 걱정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대상은?

-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혹은 만 19~39세 청년
- 입주신청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권 부여

기숙사 비용은? 월 임대료 19~30만원대로 시세의 50%이하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별도)

입주 기간은?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 기숙사형 청년주택

4 대학생 기숙사



입주대상

대학교 재학생

우선배정

저소득·장애학생 최소 배정비율 30%(기존 15%) * 행복공공기숙사에 해당

기숙사비

행복 공공기숙사(캠퍼스내), 행복 연합기숙사(캠퍼스외)
: 월 24만원 이내(2인 1실 기준) * 타 유형은 여건에 따라 차이

공급물량

5년간 5만명이 입실 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 기숙사 공급
* 행복(공공·연합) 기숙사, 국립대 BTL 기숙사, 민간기부형 기숙사 등

행복기숙사 참고: <https://www.happydorm.or.kr/ko/index>

❖ 기숙사형 청년주택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업소개

청년주택소개

입사/퇴사안내

생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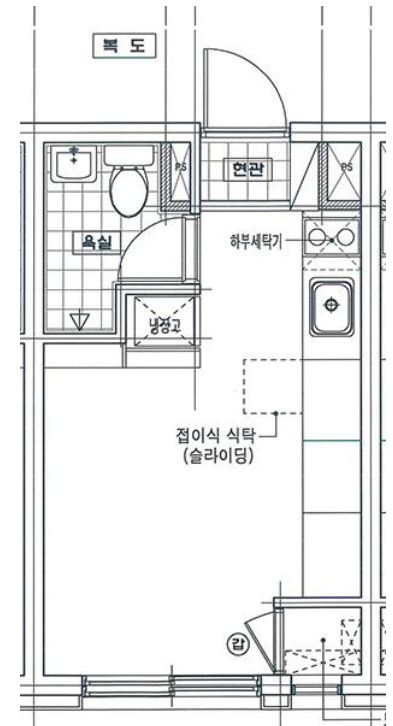
커뮤니티

대한민국 모든 청년이 주거 고민없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HAPPY YOUNG HOUSE



독산동 청년주택
1인당 평균 월 31만 5천원 수준



공지사항

개봉동	2020년 1월 관리비 공지	2020.03.30
독산동	2020학년도 1학기 정기 입사 관 ...	2020.03.05
개봉동	2020학년도 1학기 정기 입사 관 ...	2020.03.05
독산동	2020학년도 1학기 수시 입사생 ...	2020.03.02
개봉동	코로나19 예방 관련 협조요청	2020.02.25
독산동	2020학년도 1학기 정기 입사 안내	2020.02.21

Q&A

관리비 문의	2020.04.01
온라인 강의 연장	2020.03.31
독산동 과오납금 환불	2020.03.30
온라인 강의 연장 문의	2020.03.29
독산동 장기외박신청	2020.03.29
독산동 장기외박신청서	2020.03.28

서비스 바로가기

개봉동 입/퇴사	독산동 입/퇴사	개봉동 소개	독산동 소개
개봉동 청년주택	독산동 청년주택	시설고장신고	FAQ

❖ 공공기숙사

- ① 수도권 대학? 월 15만원 <대학생 연합생활관>교육부와 전국은행연합회가 함께 설립
- ② 월 20만 원 대! 전국 시·도별 <행복기숙사>
- ③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 월 10만 원 대 <재경기숙사> 해당 지역 출신의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남명학사 창원관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행복한 보금자리 남명학사

[바로가기 >](#)

남명학사 서울관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의 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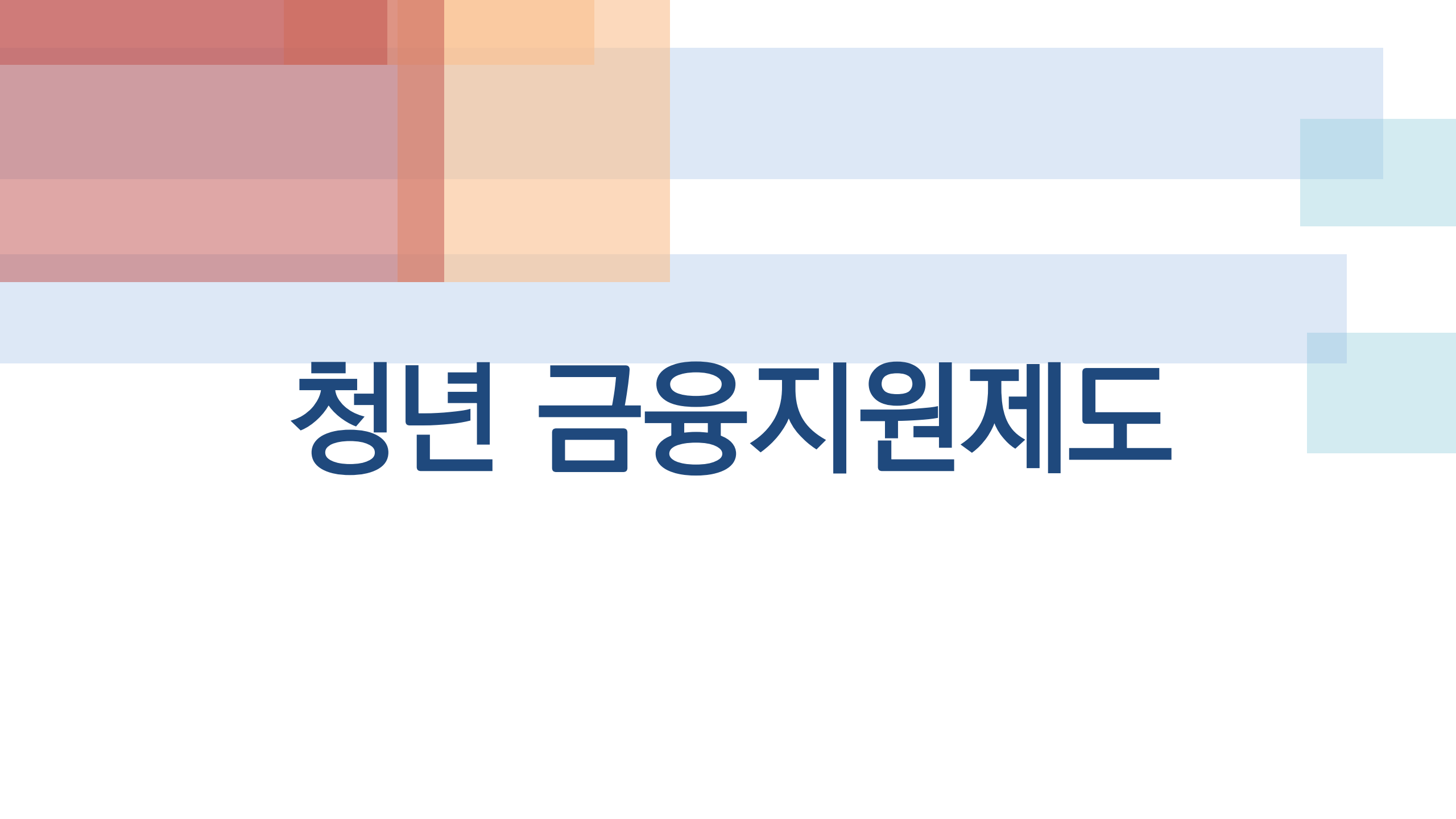
[바로가기 >](#)



남영학사 창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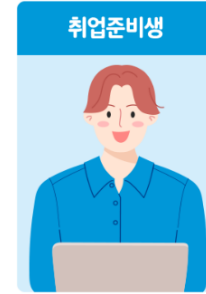
입사등록금: 65만원(3-6월 또는 9-12월, 방학기간 제외)
입사비: 5만원 / 학생부담금 60만원(월 15만원)



청년 금융지원제도

1. 주거안정월세대출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저리로 대출
-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취업준비생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사회초년생

대출금리



대출금리
연 1.5%

대출한도



매월 40만원씩
총 960만원대출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한 눈에 알아보는 주거안정월세대출

구분	우대형	일반형
지원대상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연 1.3%	연 1.8%
대출한도	960만원 한도 (매월 40만원씩 최장 2년)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상환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마다 10% 상환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마다 25% 상환



주거안정월세대출이 가능한 주택 형태

일반 주택



임차료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면적



임차전용면적 85m² 이하
(읍, 면 지역은 100m² 이하)

공동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형태상
특별한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또는 고시원은 대출 제한됩니다.

2.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201.jsp>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 최대 1,200만원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WHO

어떤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WHAT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출 한도

보증금 + 월세 대출

대출금액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월세 1,200만원(월 50만원 이내) 2023년

보증금 3,500만원, 월세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25개월 만기일시 또는 혼합상환

(25개월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대출 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 연 1.0%



2.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 30만원 청년 보증부월세대출을 모두 받는 경우

총 대출 한도 (3천만 원의 80%) = 2,400만원

보증금 대출 한도 (3천만 원의 70%) = 2,100만원

월세 대출 한도 (총 대출한도-보증금 대출한도) = 300 만원

단 월세대출만 받는 경우,
월 50만원(2년 동안 총 1,200만원)까지 대출가능

대출을 받을 경우 발생할 월별 예상 이자는 (대출금액) × 연이자 ÷ 12개월

보증금(1.3%) 대출시 월 발생 이자 2,100만원 × 1.3% ÷ 12 = 월 22,7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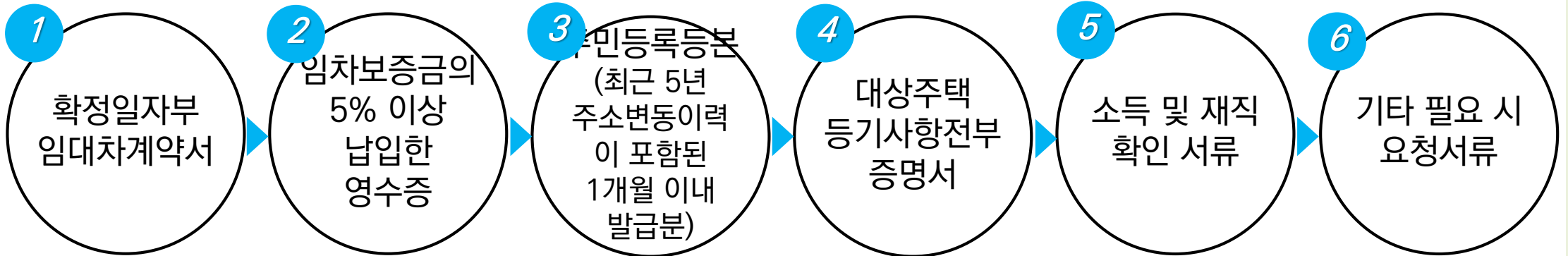
월세(1.0%) 대출시 월 발생 이자 총 300만원 × 1.0% ÷ 12 = 월 2,500원

매월 25,250원
정도의 이자 부담

2.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방법

온라인(주택도시기금 포털)과 오프라인(업무취급은행) 모두 신청가능
필요서류는 은행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취급은행



2.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대상자	대출 접수일 현재 만 34세 이하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 세대주 포함) 2. 부부 합산 연소득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0억원 이하인 자
대출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호당 대출한도	-대출금액(보증금 대출 + 월세 대출금 대출)이 임차보증금액의 80%이내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월세 최대 1,200만원(월 50만원 이내 ×24개월)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에서 가능
대출 기간	2년 만기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대출 금리	(보증금)연 1.8%, (월세) 연 1.0%(20만원 초과)
보증료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

3.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높은 예금 금리의 저축 혜택과
향후 주택청약에도 사용가능
2023년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무엇인가요?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비과세 혜택 제공



대상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우대금리 최대 3.3%(연 6백만원까지 적용, 5천만원 한도)
비과세 연 6백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백만원 한도)

연 3천 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청약통장이니!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일반 주택청약	연 1.0%	연 1.5%	연 1.8%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연 2.5%	연 3.0%	연 3.3%

*10년 초과시부터 연 1.8%로 통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기존 청약통장 vs. 청년우대청약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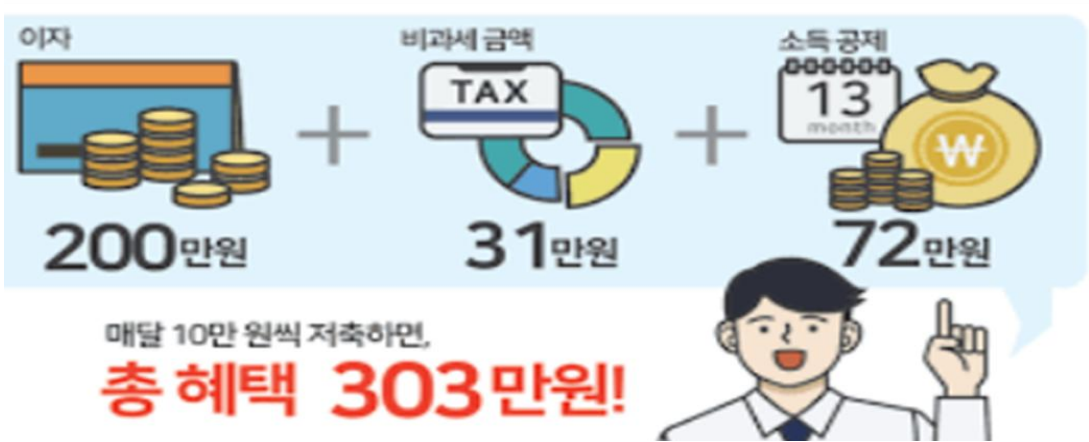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기존 청약통장	1.0%	1.5%	1.8%	1.8%
청년우대 청약통장	2.5%	3.0%	3.3%	1.8%

혜 택	금리	원금 5천만원 까지 연 최대 3.3%
	비과세	이자소득 5백만원 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연간 240만원 범위에서 40% 공제

매월 10만원씩 10년 동안 저축한다고 가정

기존 청약통장의 경우
이자 108만원 (이자소득세 14% 부과) 청약저축대비
증액 123만원

청년 우대형 통장의 경우
이자 200만원 + 비과세 31만원



3.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납입금액에 따른 우대내역 (단위:원)

* 10년간 매달 납입했을 경우 가정

월 납입금액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이자	200만	396만	594만	792만	991만
	(108만)	(216만)	(324만)	(432만)	(540만)
비과세	31만	61만	82만	94만	104만
소득공제	72만	144만	144만	144만	144만
총계	303만	601만	820만	1030만	1239만
청약저축대비 증가액	+123만	+241만	+352만	+454만	+555만

자료: 국토교통부

3.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개설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개설 및 전환은 온라인 개좌 개설 불가능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시중 수탁은행에서 개설



취급은행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조건충족시)
- 최대 4.5%의 이율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가입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 표

가입 기간	기존 청약통장 이자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3%	연 3.7%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8%	연 4.2%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3.1%	연 4.5%
10년 초과	연 3.1%	연 3.1%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음

5.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 ▶ 대출금리 연 1.8%~2.7%
-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1억 6천만원**
-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청년월세 특별지원

- ▶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 ▶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240만원)
-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 ②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 사전 모의대상: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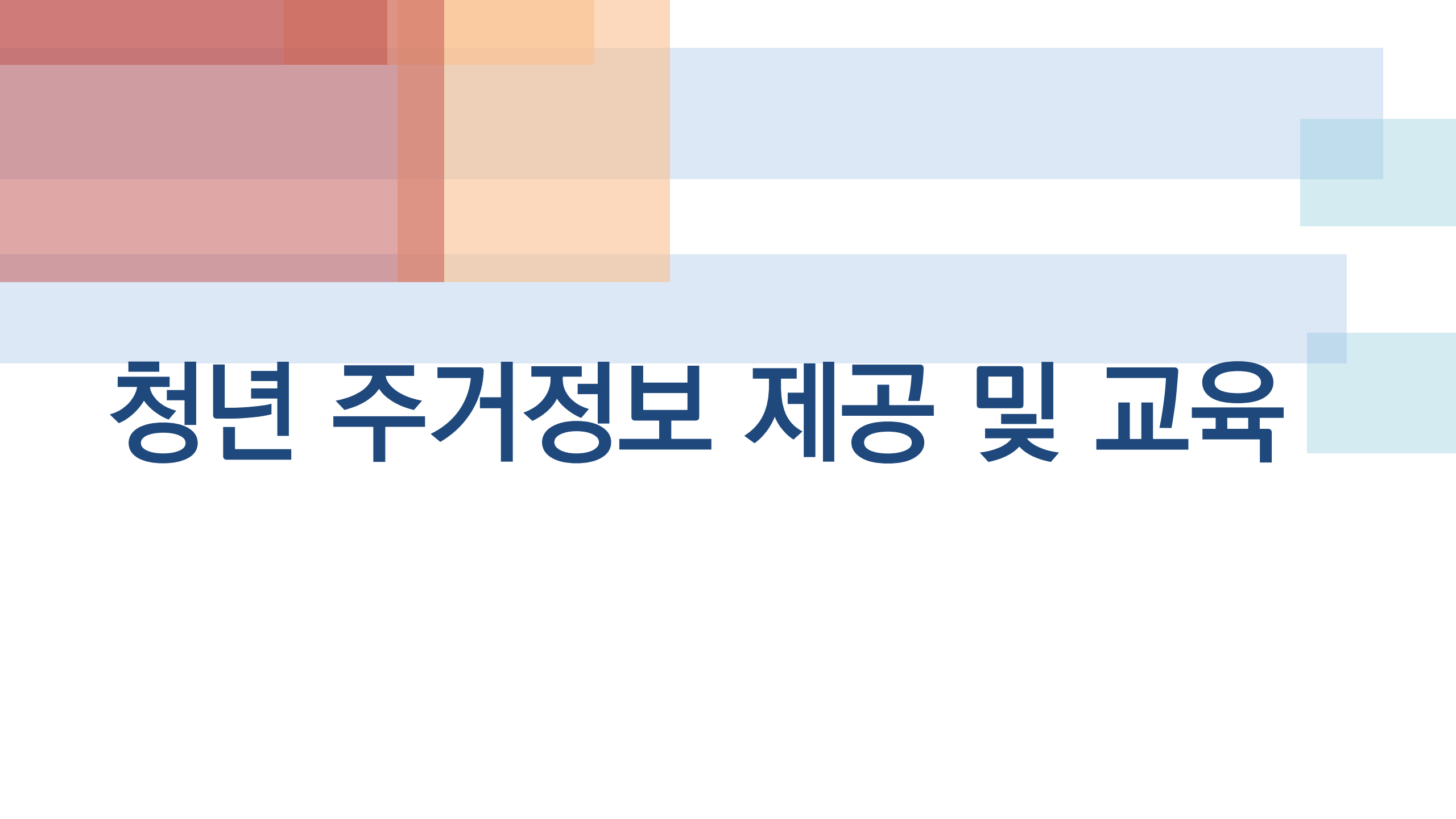
신청 기간
2022.8.22(월) 부터 1년간

지급 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소득·재산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 주거정보 제공 및 교육

www.myhome.go.kr



마이홈 포털 정보제공 확대

- 주거지원 프로그램, 자가진단 서비스, 공공임대 주택 단지정보, 저렴한 주택 매물정보 등 제공('15.12월 오픈)
- 주택임대차계약 기본정보(중개수수료, 임차인 권리, 계약서 작성방법 등), 주택 자금 지원 제도, 주택 탐색 방법 등 패키지 제공('18년~)





청년 대상 찾아가는 주거상담, 교육

-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 주거서비스 신청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센터 운영(LH 및 지자체)
-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대학교·청년단체 등과 연계하여 대학생 등 청년 대상 찾아가는 주거 상담 및 교육 추진('18년~)

❖ 경상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https://www.gyeongnam.go.kr/housing/index.gyeong>



주거정책

한눈에 보기

정보자료실

알림

SMS 알림 신청 | 로그인 | 회원



경상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경상남도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정보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검색을 제공합니다.

경상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경상남도 청년·신혼부부의 행복한 미래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주거정책을 제공합니다.

찾으시는 주거정책 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추천검색어: #임대주택 #세어하우스



맞춤정책 찾기

분야별



경남 전체



대상별(전체)



연령별



Q 정책 찾기